

# 대법원 2021도7251 선박안전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해운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약)는, ① '감항성 결함'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중대한 결함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선박에 감항성의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② 나머지 원심판단도 수긍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당사자들의 관계

- ▣ 피고인 7 ⇒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해운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 피고인 1 ⇒ 피고인 7의 대표이사
- ▣ 피고인 2~6 ⇒ 피고인 7의 임직원

### 나. 공소사실의 요지

- A선박에 대한 감항성(堪航性)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피고인 1, 2, 5]
  - A선박에 평형수탱크 횡격벽 변형 등의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
- B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피고인 2, 6]
  - B선박에 상갑판 선체 좌굴, 화물창·평형수탱크 내부 균열 등의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
- 선박 복원성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피고인 1, 3, 4]
  - 19척의 선박들을 승인된 복원성 자료(균일만재적재)와 다른 방식(격창 적재)으로 운항함으로써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함
- 배임수재[피고인 2]
  - 자격 없는 업체로부터 선박의 전기 수리 등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음
- 선박검사 거짓 수검으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피고인 5]
  - 선박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정밀검사 대상을 현상검사 대상으로 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마치 피고인 5가 이를 직접 사실대로 작성한 것처럼 서명한 후 이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현상검사를 받게 함
- 피고인 7
  - A, B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 양벌규정

## 2. 소송경과

### 가. 제1심

피고인	공소사실	판단
피고인 1	복원성유지의무 위반	무죄
	A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	유죄
피고인 2	A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	유죄
	B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	유죄
	배임수재	유죄
피고인 3	복원성유지의무 위반	무죄
피고인 4	복원성유지의무 위반	무죄
피고인 5	A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	유죄
	선박검사 거짓 수검	무죄
피고인 6	B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	유죄
피고인 7	A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	유죄
	B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	유죄

▣ A, B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 및 배임수재 ➡ 유죄

- 감항성 결함과 미신고행위를 인정함
- 배임수재행위를 인정함

▣ 선박 복원성유지의무 위반과 선박검사 거짓 수검으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 ➡ 무죄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자료에 수록된 재화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복원성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음
- 피고인 5는 선박소유자가 아니므로, 거짓 수검으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양형

- 피고인 1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2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
- 피고인 5 ⇒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6 ⇒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7 ⇒ 벌금 1,500만 원

## 나. 원심

- ▣ 유무죄 판단은 제1심과 동일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양형만 달리함
  - 피고인 1 ⇒ 징역 6월
  - 피고인 2 ⇒ 징역 8월, 추징 1,000만 원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 A, B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감항성 결함'의 의미
- ▣ 복원성유지의무 위반 및 선박검사 거짓 수검으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 나. 판결 결과

- ▣ 쌍방 상고 모두 기각(원심 수긍)

### 다. 판단 내용

- ▣ 검사의 상고이유(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
  - 원심의 무죄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박안전법상의 복원성유지의무, 선박검사 거짓 수검에 따른 의무 위반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 피고인 1, 2, 5, 6, 7의 상고이유(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
  -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에

서 정한 감항성인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A, B선박에 대한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